

[별표 2]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관련)

구 분	협 의 대 상 지 역 등
1. 공통기준	가.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등의 지정·결정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2.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보전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개발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지정 또는 결정되어야 한다. 나.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 또는 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